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O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개정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도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
- O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

4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O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O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4조, 제5조)
- 도지정문화유산, 도등록문화유산,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(안 제21조, 제22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)
- 도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조사 (안 제47조, 제49조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체제 변환에 따라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명 변경,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-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의 추가 사항,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 획 수립,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, 문화유산자료의 지정, 개발사 업 관련 규정을 추가 하는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이 인정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조 목적,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국가유산체제를 전환하는 내용의 상위법인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제명인 「충청북도 문화 재 보호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"문화재, 문화재자료" 등의 명칭을 "문 화유산, 문화유산자료" 등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음.
- 안 제5조는 "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"를 "충청북도 문화유산 위원회"로 위원회명을 정비하였고, 안 제10조의 위원회 회의소집에 현행 위원장 이외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소집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의효율성을 확보하였음.

O 안 제12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작성된 회의록 미공개 사 유를 세분화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음.

안 제12조 제2항 회의록 미공개 사유 신설

- 1. 위원회 등의 위원, 전문위원 등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 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·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 우 공정한 조사·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
- 안 제13조는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안 제13조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신설

- 1.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- 2호 ~ 5호 현행 사유 유지
- 6.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O 안 제14조는 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·기피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 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안 제14조 위원의 제척·기피 사유 추가 신설

- 제1항 1. 배우자이었던 사람 추가
 - 2. 친족이었던 경우 추가
- 3.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구체화 : 증언, 진술, 자문 연구 제2항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- 안 제22조는 국가, 도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도등록문화유산 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보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음.
- O 안 제44조는 손실의 보상 규정으로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음.
- 안 제53조와 안 제54조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규정으로 개발사업 시 매장유산의 보호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해 협의나 조치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을 방지 하고 보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명 변경,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체제 도입에따른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립을 위해 타당하고 판단 됨.
- 현행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상 자연유산과 관련한 규정은 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독립조례로 운영하고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규정만으로 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로 전부개정하여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신설된 내용의 경우 조례 운영의 공정성 과 명확성을 확보하고, 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보존과 보 호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'문화유산'이라는 용어가 기존 '문화재'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문화유산 분류체계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에 대 해 도민들에게 안내와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 로 노력해야 할 것임.

붙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